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·방송·통신은 11월 19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배포일시	2020. 11. 18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장수철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윤제민 서기관(044-203-5881)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,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
-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」 개정 -

□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「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**(이하 '고시')」 및 「**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**(이하 '예규')」을 **개정**하여 **11월 20일부터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금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**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**하여

○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·상표권 같은 **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**되었다.

□ 우선, **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** 등을 통해 **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**을 높였다.

○ **그간 10일 이내**(예규)로 주어졌던 **조사신청서 보완기간**을 **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**(고시)하여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**의견청취, 현지조사 등을 실시**할 때, 예외적인 경우*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**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**토록 하였다.

* 사전 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

** (의견청취) 신설, (현지조사) 예규 →고시 상향

○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**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***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(10일 이상, 조사기간에 불포함)(행정절차법), 상대방 제출 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(최초 30일내, 15일씩 2회 연장가능)(고시 타 규정 준용) → 고시 명시

□ 아울러, **조사제도의 투명성**을 높이기 위해 **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**하였다.

○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**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*을 구체적으로 규정**하는 한편,

*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

○ 조사상 필요시 **물품·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*을 고시·예규에 명문화**하여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,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.

* 서면통지(대상물품·자료, 제출기한. 방법 등) → 영치조서 작성·교부 → 조사 후 반환 원칙

□ **무역위원회**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**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**이며,

○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**이라고 밝혔다.

□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**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(044-203-5881~9)로 연락**하면 불공정무역조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윤제민 서기관(☎ 044-203-5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(고시)」 및 「불공정 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(예규)」 개정 주요내용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조사신청서 보완 기간	■ 10일 이내의 기간 부여 (예규)	■ 10일 이상 30일 이내	**기간 확대** 및 예규→**고시 상향**
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	■ 고시 '질의서 회신기간' 준용 - 30일 이내의 기간 부여 15일씩 2회 연장 가능	■ 좌 동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명문화)
사전통지한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	■ 행정절차법 '사전통지 의견청취기간' 준용 - 10일 이상의 기간 부여	■ 좌 동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명문화)
	■ 처리기간에 불산입 (예규)	■ 조사기간에 불산입	**용어** 명확화 및 예규→**고시 상향**
의견청취 통지기간	-	■ 출석일 7일전까지 통지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명문화)
현지조사 통지기간	■ 조사일 7일전까지 통지 (예규)	■ 좌 동	예규→**고시 상향**
철회 수락 요건	■ 자유경쟁 저해정황, 제도 남용 등(예규)	■ 좌 동	예규→**고시 상향**
주요 서식	-	■ 영치조서 신설	**신설**
	■ 이의신청서, 영업비밀 자료취급요청서 등(예규)	■ 좌 동	예규→**고시 상향**
감정 실시 요건	-	■ 기술적·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많은 경우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구체화)
자료제출명령 세부절차·방법	-	■ 서면통지→영치조서 교부→조사 후 반환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구체화)
현지조사 세부절차·방법	-	■ 필요성 설명→영치조서 교부→조사 후 반환	**신설** (고시·예규에 구체화)

붙임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특허권,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 등을 조사·판정하고,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

	유 형
①	**지식재산권 침해물품**의 수출입, 판매, 제조, 해외공급행위
②	**원산지표시 위반물품**의 수출입행위
③	**품질 허위·과장표시 물품**의 수출입행위
④	기타 **수출입질서 저해행위**

□ **(절차)** 조사신청 접수* → 조사개시 결정 → 서면•현지조사 등 실시 → 판정(조사개시일로부터 6~10개월) → 제재조치 시행

*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

제재조치	주 요 내 용
시정조치	수출·수입·제조·판매 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폐기처분 정정광고 사실공표 등의 명령
과징금	조사대상 기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%까지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은 3억원까지 부과

* 시정조치 未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
□ **(판정)** '87~'20.10월까지 **총 384건**의 **조사신청**이 있었으며, 이 중 **138건**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, 수입·제조 금지 등 **제재조치**

* 유형별로는 **지재권 침해조사**(241건, 62.8%)가 가장 많고, 원산지 표시위반(76건, 19.8%), 수출입 질서저해(65건, 16.9%) 順

- 특히 최근 지재권 침해조사건에 신청이 집중되는 추세
 (최근 5년('15~'20.10월)간 조사신청된 56건 중 96%(54건)가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관련 건)